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94호 2021. 6. 21.(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35호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536호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6
남해군 조례 제2537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0
남해군 조례 제2538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남해군 조례 제2539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남해군 조례 제2540호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1
남해군 조례 제2541호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남해군 조례 제2542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남해군 조례 제2543호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32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95호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35
---------------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92호	도로명주소 고시	41
------------------	----------------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853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44
남해군 공고 제2021-885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35호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6월 2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남해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사업의 규모
3.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원사업의 추진
- 2. 신중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3. 인생이모작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4. 신중년에 대한 노후생활 준비 및 활동에 대한 상담
- 5.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센터의 장과 필요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지원센터의 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신중년 인생이모작 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부서의 장
 3. 신중년 인생이모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사망·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36호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6월 21일

남 해 군 수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2 남해군 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의 해 지정) 남해군은 2022년을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방문의 해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방문의 해 행사 이벤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절, 질서, 청결운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문의 해 추진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문의 해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방문의 해 홍보활동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문의 해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방문의 해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정홍보 업무·기관 및 단체 업무·자원봉사 업무·문화 관광업무·지역경제 업무·교통 업무·환경 업무·위생 업무·유통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군수는 필요하면 각 부서별 업무 담당 팀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 의원
2. 학계 전문가 및 언론인
3. 관광관련 사업자·소상공인 및 문화예술·관광·환경 단체 회원
4.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2. 그 밖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공동명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문의 해 담당 팀장이 된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남해군 조례 제2537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6월 2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와 같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대방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정산보고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남해군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당연직 위원 : 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 업무 담당 소장
- 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남해군 조례 제2538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6월 2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성과담당관, 행정지원담당관, 공공건축추진단, 환경물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성과담당관”으로, “전략개발, 홍보, 감사, 법무규제개혁”을 “성과관리, 전략개발 뉴딜, 홍보, 감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지원담당관의 분장사무는 행정, 군민소통, 후생, 법무규제개혁, 정보전산, 통신관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④ 공공건축추진단의 분장사무는 청사행정, 청사건축, 공공건축,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⑤ 환경물관리단의 분장사무는 환경정책, 자원순환, 환경보전, 환경시설,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 중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안전건설국”을 “주민생활관광국, 경제안전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행정복지국)”을“(주민생활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민생활관광국에 주민복지과, 민원지적과, 청년혁신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 ② 주민생활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복지정책, 노인복지,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장사행정에 관한 사항
 2. 민원행정,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부동산등록에 관한 사항
 3. 청년과혁신, 남해정착지원, 평생학습, 교육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부과, 경리, 재산관리, 세입관리, 재산세에 관한 사항
 5.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섬발전, 관광시설, 문화예술, 문화재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레포츠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관광경제국)”을 “(경제안전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제안전건설국에 지역활성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를 둔다.
- ② 경제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친환경에너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수산기획, 어업지도, 양식산업, 연안관리, 해양보전,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3. 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건축민원, 복합민원,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5. 건설관리, 농업기반, 도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8조제2항 중 “보건지소장”을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감염병 예방에 관한사항
- 3.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 4.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
- 5.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 6.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항
- 7. 공공보건 및 의료기관 약국 등에 관한 사항
- 8. 치매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조례 제249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39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6월 2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9명” 을 “673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6 명” 을 “660명” 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조례 제249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40호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6월 2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남해군에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해군민은 군수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이

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1. 당연직 위원: 장애인 정책 업무 부서장
- 2. 위촉직 위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군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자격) ① 제1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하려는 날 현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의 보조나 간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군수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2.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익신장 사업
4. 장애인 재활훈련 및 자활지원 사업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6.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려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의 책임으로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임의로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위탁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다만, 위탁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3.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비용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 ① 군수는 법 제63조에 따라 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사회참여 및 체육·문화·여가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19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사회·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제공

- 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 5.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
- 6. 장애 여성의 자립생활지원 및 출산·육아 지원서비스
- 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제20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① 장애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은 군수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우선지원 대상)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①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장애인 관련 시설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종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해군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541호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6월 2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을 “건축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42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6월 2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 라 한다)” 를 “가족관계등록부” 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2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2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을 “2021년” 으로,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1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	100분의 60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	100분의 65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	100분의 70
100분의 70초과	100분의 75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7월 1일” 을 “2021년 7월 1일” 로,
 “균등분 주민세” 를 “사업소분 주민세(「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2.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나목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
 하인 법인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나목 4) 그 밖의 법인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균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균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증가산금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을 “법 제177조”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균세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균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의4 신설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조례 제2543호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6월 2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들로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95호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6월 2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을 “남해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남해군세조례」” 를 “「남해군 군세 조례」” 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한다.

제4조 중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 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로, “같은 법 제51조” 를 “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 을 “(사업소분)”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재산분” 을 각각 “사업소분” 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로, “같은 법 제51조” 를 “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로, “같은 법 제51조” 를 “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중 “(균등분)” 을 “(개인분)”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제목 중 “(재산분)” 을 각각 “(사업소분)”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9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성남로 79-14 외 2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5)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6.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 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에정일		도로명부여사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743-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79-14	20210614	현재는 폐교이나 인근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성남초등학교가 위치했던 길이었음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20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937-72	20210614	남해군의 중심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입현리 1003-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를 남해대로 2529-2	20210614	남해군의 중심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131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강진만으로 9-8	20210614	남해본섬과 장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783-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강진만으로 46	20210614	남해본섬과 장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423-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276	20210614	내산은 고속도로 건설 등 나라발전에 앞장선 최치환 선생이 출생한 곳으로 그의 호를 따 금암로라 함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614-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 75	20210614	두류(전통, 정동, 쇠를 불리던 곳)과 양지(산을 등지고 않은 마을의 좌가 정남)를 연결하는 도로임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36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리로 22-39	20210614	동쪽의 두, 세번째 행정구역이라는 뜻으로 지어 부른 방위지명인 이동면과 삼동면을 연결하는 도로임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892-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1268번길 22-24	20210614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86-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 165	20210614	남해읍 소재지의 중심도로로서 아름다운 남해를 나타내는 옛 지명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지족리 494-6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서부로 111	20210614	장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관천리 225-2	경상남도 남해군 장신면 서부로 326-6	20210614	장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47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017번길 10	20210614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892-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1268번길 22-24	20210614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6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1505-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023번길 65	20210614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230-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534번길 22-18	20210614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61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745번길 61	20210614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신전리 535-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84번길 79-5	20210614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간리 16-179, 16-17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132-25	20210614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신소로 76번길 69	20210614	신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창신면 상곡리 379	경상남도 남해군 창신면 창신로 131번길 106-16	20210614	창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96-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 78번길 14-1	20210614	화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853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 제정이유
남해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 협력단체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조직(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라. 사업계획 및 의결·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7월 0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52, 팩스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정책팀(전화 055-860-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남해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 협력단체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이행계획 실천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평가
2.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군의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해결의 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협의회 업무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 2.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총회)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이행계획의 평가 및 보고
- 2. 연간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 3. 협의회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
- 4.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5.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7.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조직) ① 협의회는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 업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총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 또는 그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의 위임·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협의회가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에 따른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각종 행사
2. 이행계획 실천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평가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5. 군의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보고 및 감사)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885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시적 사육두수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로 축산농가의 사육여건 안정성 제고
 - 나. 제한구역(전부, 일부)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일부제한 구역내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위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여 가축사육환경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3. 주요내용
 - 가. 소규모 가축사육제한 유예기간 신설
 - 소, 젖소, 말, 사슴: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의 소, 젖소, 말, 사슴은 사육두수 산정에서 제외
 - 나. 제한구역(전부, 일부)에 있는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다수 인관련민원 해소를 위해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이전 신축을 허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 이전 신축으로 민원 발생이 감소하거나 주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2.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은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설치하고 별표 2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 3.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준공검사 신청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존 시설에 대한 폐쇄신고서를 제출할 것
- 4.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1년 7월 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72, 팩스 055-860-3707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지도팀(전화 055-860-3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와” 를 “별표 1과” 로 한다.

제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축사육(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 을 “가축사육.” 로 한다.

제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이 신고나 허가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4호가목 중 “사슴 : 5두 이하” 를 “사슴: 5두 이하(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의 소, 젖소, 말, 사슴은 사육두수 산정에서 제외)”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메추리 :” 를 “메추리:” 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존 배출시설의 이전 신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존 배출시설을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이전 신축으로 민원 발생이 감소하거나 주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은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설치하고 별표 2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3.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준공검사 신청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존 시설에 대한 폐쇄신고서를 제출할 것
4.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생략)</p> <p>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u>별표</u>와 같다.</p> <p>③ (생략)</p> <p>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4. 다음 각 목의 소규모 <u>가축사육(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 <단서 신설></u></p> <p>가. 소, 젖소, 말, 개, 양, <u>사슴</u> : 5두 이하</p> <p>나. 닭, 오리, <u>메추리</u> : 20수 이하</p> <p>5. · 6. (생략)</p>	<p>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 1과</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가축사육. 다만,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이 신고나 허가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u></p> <p>가. ----- <u>사슴: 5두 이하(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 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의 소, 젖소, 말, 사슴은 사육두수 산정에서 제외)</u></p> <p>나. ----- <u>메추리:</u> -----</p> <p>5. · 6.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5조(기존 배출시설의 이전 신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존 배출 시설을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전 신축으로 민원 발생이 감소하거나 주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은 기존 배출 시설 면적 이하로 설치하고 별표 2의 악취저감시설을 갖출 것 3.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준공검사 신청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존 시설에 대한 폐쇄신고서를 제출할 것 4. 이전 신축하는 배출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1]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밀집지역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밀집지역 외 광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젓소·말·사슴·양 : 200m이내 - 닭·오리·메추리 : 500m이내 - 개·돼지 : 1,500m <p>※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거리로 한다.</p>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밀집지역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밀집지역 외 광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젓소·말·사슴·양: 200m이내 - 닭·오리·메추리: 500m이내 - 개·돼지: 1,500m이내 <p>※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거리로 한다.</p>

[별표 2]

악취저감시설 기준(제5조제2호 관련)

축 종	악취저감시설 기준
소 (젓소, 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축사)은 톱밥 또는 왕겨 축사로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 이상(젓소는 10cm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 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닭·오리·메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사슴·양 (염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를 식재하거나, 무창축사 배출구 주변에 담장(휀스 등)을 설치하여 악취 확산을 예방하여야 한다.
-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